

서울회생법원

제 1 5 부

결 정

정본입니다.

2023. 6. 26.
법원주사 송지영



사 건 2023회합100077 회생
신 청 인 겸 주식회사 신일
채 무 자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5, 501(효자동2가)
대표이사 공윤규
신청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, 홍석재,
심상아

주 문

1.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.
2.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.
3. 회생채권자,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. 6. 26.부터 2023. 7. 20.까지로 한다.
4.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. 7. 21.부터 2023. 8. 8.까지로 한다.
5.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. 8. 9.부터 2023. 9. 5.까지로 한다.
6.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. 10. 27.까지로 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채무자는 1985. 1. 24. 설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.

나. 채무자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900,000주(1주당 금액 5,000 원, 자본금 45억 원)이며, 주식회사 세정토건이 450,001주(지분율 50.0001%), 주식회사 지엔에스케이텍이 449,999주(지분율 49.9999%)를 각 보유하고 있다.

다. 채무자는 전세계적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였고(특히 2022. 8. 착공한 울산 덕하역 신일해피트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분양률이 15%에 그친 상황에서 공사 진행을 위해 자체자금을 투입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다),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었으며,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다.

라. 2022. 12. 31. 기준으로 실사조정된 채무자의 자산은 약 827억 원인 반면, 현재 부채가 약 7,380억 원(미발생구상채권 제외)에 이르고 있는바,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. 또한 현재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하도급채무 및 상거래채무 합계액만 약 400억 원에 달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현금이나 유동자산만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이 어렵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,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이라고 한다)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,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,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항, 제4항을, 회생채권자·회생담보권자·주

주·목록의 제출기간,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의 신고기간,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,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3. 6. 26. 10:00

재판장

판사

나상훈



판사

설동윤



판사

김기홍

